여행경보제도

1단계 남색경보 **여행유의**	2단계 황색경보 **여행자제**
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·대비	(여행예정자) 불필요한 여행자제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
3단계 적색경보 **출국권고**	4단계 흑색경보 **여행금지**
(여행예정자) 여행 취소·연기 (체류자)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	(여행예정자) 여행금지준수 (체류자) 즉시대피·철수

※ 자세한 내용은 www.0404.go.kr 참고

출국 전 체크리스트

준비하세요!



- ☑ 여권, 비자
- ☑ 신분증, 증빙자료사본
- ☑ 여행자보험
- ☑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앱
- ☑ 해외안전여행앱

확인하세요!

영사안전콜센터

- ☑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(www.0404.go.kr)
- ☑ 여행경보단계
- ☑ 재외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 연락처

유의하세요!



- ☑ 현지법과 규범
- ☑ 모르는 사람의 지나친 친절
- ☑ 낯선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

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앱

Android | iOS



Wifi 환경에서 무료 전화 상담

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 할 경우
위치 기반 상담 가능

SNS 상담 서비스

카카오톡 | 라인 | 위챗

※위챗은 반드시 위챗 앱 실행 후 **QR코드 스캔**

외교부 해외안전여행



Android | iOS

www.0404.go.kr

+82-2-3210-0404

영사안전 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

국내 02-3210-0404

해외 +82-2-3210-0404
(통화요금 부과)

모바일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앱,
카카오톡/라인/위챗상담



외교부

해외 사건·사고 및 위난 접수

영사안전콜센터는 **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사건 · 사고 및 위난 1차 접수 창구**로서,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**연중무휴 상담 서비스를 제공**하고 있습니다.

사건 · 사고

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관할 지역의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**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사고를 접수 · 전파**하고 재외국민의 **안전을 확인**합니다.



사건 · 사고 접수 → 관할공관 전파 → 영사조력 제공

위난

자연재해, 전쟁·테러 등 위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인합니다.



연락두절자 접수 및 확인 → 체류국민 안전점검 → 안전정보 제공

긴급 상황 통역 지원 서비스

해외에서 사건·사고나 위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직접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, **7개국어(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프랑스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)로 통역을 지원**합니다.

✓ 이런 건 가능해요!

- **사건 ·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**
  – 사고 현장 의사소통, 경찰 신고 등
- **해외 위난상황 초기 대응**
  – 현장 상황 파악, 긴급 대피 등
- **긴급 의료 상황 초기 대응**
  – 응급실 이송, 비상 의약품 구입 등

✗ 이런 건 곤란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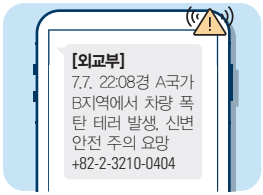
- **사건 · 사고 관련 수사상 진행 단계**
  – 경찰 진술, 조서 작성 등
- **긴급 의료 상황조치 이후 단계**
  – 진료, 환자 국내 이송 등
- **사적 업무 및 사인간 분쟁, 불법 행위**
  – 사적 업무 및 사인간 분쟁, 불법 행위
  – 관세, 교통/숙박 등 각종 예약·변경·취소, 물품 구매, 유흥/오락

※ 초기 상황을 넘어 **본격적인 수사 · 재판 · 의료 등**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통역사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해외안전여행 지원

해외안전 로밍문자 서비스

사건 · 사고 예방을 위해 **도착국가 안전 정보**를 로밍 문자메시지로 제공합니다.



신속해외송금 지원

해외 여행 중 소지품 도난,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**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**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한도: 1회 미화 3,000달러
- 제외대상: 불법/탈법 목적의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, 상업적 목적의 송금 등

Step 1 긴급 경비 송금 요청
현지 대사관(영사관)에 긴급 경비 송금 요청

Step 2 농협, 우리은행 입금
해외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가 입금

Step 3 긴급 경비 전달
해외 여행자에게 현지에서 지급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(제10조, 제19조)

- 조약·국제법규 및 주재국 **법령 준수**
- 주재국의 제도·문화 등 **특수성 고려**
- **국내**에서 발생한 **유사상황 시**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**초과 불과**
- 재외국민이 사건·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 등 **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**에 제공
-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에 드는 **비용의 자기부담 원칙**